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7. 10. 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임 기 중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7월 3일

3. 개정이유

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수업료 면제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○ 학생 전출·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과 같이 일할계산으로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, 면제대상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(안 제4조, 부칙 제2조)

나. 학생 전출·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할계산으로 하되, 수업료를 일할계산하는 타 시·도의 학교로 전출·전입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법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제3항 및 안 제6조제2항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정책에 따라 공·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2021학년도 1학기까지 단계적으로 면제하고, 학생 전출·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과 같이 일할계산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
※ 고등학교 입학금은 2017. 12. 15. 조례 개정으로 이미 면제하였음

○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교육기본권 보장과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○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담고 있고,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

○ 다만,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관련법안인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, 해당 법안이 적시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재원 대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※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요약

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계
총 소요액	54	286	410	401	406	415	1,972
보통교부금	40	136	195	191	193	197	952
특별교부금	14	0	0	0	0	0	14
증액교부금	0	136	195	191	193	197	912
기초자치단체 전입금	0	14	20	20	20	21	95